한국투자글로벌지수&테마로테이션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1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집합투자규약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6월 3일

3. 정정사항

-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 매입 및 환매 기준시점 변경
-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항 목	정정전	정정후
제4조의2(해외보관대리인)	제4조의2(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해외보관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5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삭제>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

	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2.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3.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3.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5.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5.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6.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8. ~ 11.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이하 생략)	6.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8. ~ 1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이하 현행과 같음)
제23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의 매입을 신청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수익증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수익증권의 매입을 신청한 영업일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의 매입을 신청한 영업일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수익증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수익증권의 매입을 신청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5영업일)에 판매회사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판매회사는 그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에 판매회사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판매회사는 그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26조(환매연기)	① ~ ⑥ (생략)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2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하 생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2영업일 전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하 현행과 같음)
제40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 8. (생략)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생략) ④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결제비용 2. 보관비용 3. 기타 부수비용 등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현행과 같음) <삭제>
부 칙	(신 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